

6. 비전임교원 인사운영세칙

현행	개정(안)
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“석학교수” 및 “방문교원”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2. ~ 9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1. “석학교수”라 함은 노벨상수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본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2. “방문교원”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</p> <p>3. ~ 10. (호 변경 / 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임용기간) ① 석학교수, 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교원, 산학협력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>제4조(임용기간) ① 석학교수, 방문·대우·연구·기금교원, 산학협력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유지)</p> <p>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
<p>제6조의2(석학교수의 자격 및 처우)</p> <p>①석학교수는 노벨상수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말한다.</p> <p>②석학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6조의2(석학교수의 처우) 석학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
<p>제6조의3(특임교수의 자격 및 처우)</p> <p>①특임교수는 교육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나거나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<p>②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6조의3(특임교수의 처우) 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